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